

# 2023년도 재단법인 「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」 출연금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22-88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.  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에 의거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“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”에 260,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근 거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
- 출연대상: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
- 출연금액: 금260,000천원
- 출연시기 및 방법: 2023. 1월중 현금출연

## 4. 참고사항: 관계법령

# 관 계 법 령

## 1. 지방재정법

### ■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2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### ■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 - 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 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# ■ 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

1. 재단 설립일: 2012. 12. 17. [업무개시: 2013. 3. 4.]

2. 재단 직원 현황: 총 8명 [0시장(무보수), 팀장 2명, 직원 5명]

※재단직원 5명(기간제근로자 포함, 육아휴직자 제외), 파견공무원 3명

3. 출연금액: 260,000천원(이억육천만원)

4. 연도별 출연금 교부 현황

[단위: 천원]

| 연도      | 2021년   | 2022년   |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출연금 교부액 | 242,000 | 256,000 | 260,000<br>(전년도 대비 4,000천원 증액) | ○재단 종사자 인건비 인상,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(5,000천원)<br>○일반경비 절감 노력에 따른 경비 감액(1,000천원) |

5. 2023년도 출연금 내역

[단위: 천원]

| 구분 | 총계      | 인건비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경비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사업비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| 소계      | 급여 및 제수당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연월차<br>보상등<br>별도<br>수당 | 퇴직<br>급여 | 소계     | 일반운영비     |           | 사회<br>보험<br>부담금등 | 소계    | 외부<br>자원개발을<br>위한<br>프로포절<br>아카데미 | 사회복지<br>종사자<br>미음건강<br>지원사업 |
|    |         |         | 팀장<br>(3급)<br>1명 | 직원<br>(4급)<br>1명 | 직원<br>(5급)<br>2명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사무<br>관리비 | 공공<br>운영비 |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액 | 260,000 | 192,730 | 52,590           | 44,909           | 75,117           | 5,354                  | 14,760   | 61,270 | 30,630    | 9,170     | 21,470           | 6,000 | 4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000                       |